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생업이나 보철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국가유공자등의 복리향상과 지방세과세업무의 적정을 기하고,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종전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자동차세를 면제 하던 것을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함(제2조2항 및 제3조1항)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협동화사업단지내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지방세감면(재산세,종토세 5년간 50%)을 하던 것을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협동화사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부여함(제12조2항)

○ 기타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결과 및 참고사항

○ 공고기간 : 2004. 11. 6 - 2004. 11. 26(20일간)

○ 공고장소 : 군.읍면게시판 및 군공보

○ 공고결과 : 다른의견 없음.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산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32조를 제33조로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등예우에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_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__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후단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후단생략)	제3조(장애인소유지동차에 대한 감면) ①---------- ---------- ----------**장애인이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 ---------- ---------- ---------- (현행과 같음)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후단생략)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현행과 같음)
제7장 보 칙 〈신 설〉	제7장 보 칙 **제32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